

세무직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기출문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변별력을 위해 2~3문제 정도는 까다로웠으나,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난이도였다고 봅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와 이론을 잘 습득하셨다면 80점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맞췄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문 1】 ④

-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시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문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3】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지방교육세는 제외

【문 4】 ③

- ①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결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 ② 지방세환급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에 총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액에는 총당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문 5】 ④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문 6】 ③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 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8】 ②

휴면)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한 법인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문 9】 ③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10】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문 12】 ①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3】 ①

납세담보가 국채인 경우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납세담보의 가액을 결정한다.

【문 14】 ③

납부통지서를 수탁제에게 고지한 후에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15】 ③

납세자가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문 16】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결정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문 17】 ②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문 18】 ④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문 19】 ③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년 5년 기간제한 규정은 삭제하였다.

【문 20】 ②

-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조례는 제외
- ③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